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25호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임실군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구호활동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실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임실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구호활동) 군수와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와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절차, 기준, 정산 및 환수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

관련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 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의 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